

KPCS 64 45 45 : 2018

마리나선박 보관시설

2018년 4월 제정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 · 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통합, 정비하여 전문시방서 시방코드로 개편한 것으로 제 ·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 · 개정 (년. 월)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1999.07)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공종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보완, 개정	개정 (2005.11)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개정사항과 상위 기술기준 및 타분야 기준의 변경 내용 반영, 케이슨 속채움, 상치콘크리트, 드라이 독 구조물, 자켓 기초구조물, 마리나시설 등에 대한 전문시방 내용을 신설 하여 보완	개정 (2014.04)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시방코드(KPCS 64 00 00)	• 기존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코드화하고, 특수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코드체계로 개편	개정 (2018.04)

제 정 : 2017년 8월 16일 개 정 : 2018년 4월 17일
 심 의 : 기술자문위원회
 소 관 부 서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한국항만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3. 시공	1
3.1 제작, 설치 및 시공	1
3.2 구매	1

KPCS 64 45 45 마리나선박 보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리나시설 중 주정장, 보트창고 등 마리나선박 보관시설의 제작, 구매, 설치, 시공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PCS 64 45 10 마리나시설공사일반(1.2 참고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PCS 64 45 10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제출물

KPCS 64 45 10 (1.4 제출물)에 따른다.

2. 자재

KPCS 64 45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설치 및 시공

이 기준의 3.2 구매에 따른다.

3.2 구매

- (1) 마리나선박 보관시설의 구매는 해당 설계서에 별도로 정해있지 않은 경우 이 기준에 따른다.
- (2) 육상 마리나선박 보관소에는 옥외와 옥내보관소가 있으며 옥내보관소에는 보통 길이 12m 이하의 마리나선박을 많이 보관한다.

마리나선박 보관시설

- (3) 육상 보관소의 형식 및 운영방식은 해당지역 기상, 경관, 마리나선박 종류와 크기, 건축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4) 육상 보관소의 복층 선반 사이에는 포크리프트의 작업과 운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5)육상 실내보관소의 출입문은 포크리프트가 보트를 적재한 채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폭과 높이를 가져야 한다.
- (6) 육상 실내보관소의 소방 설비 설치 시 상부 스프링클러에서 분사된 물이 적재된 마리나선박에 실리면서 복층 선반의 붕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7) 포크리프트는 육상 보관소 내의 가장 크고 무거운 마리나선박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안정성, 타이어의 접지압, 조종 성능 등을 지녀야 한다.
- (8) 육상 보관소의 마리나선박 진수구역은 되도록 보관소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진수 깊이를 확보하면서 다른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9) 마리나선박 보관을 위한 육상 면적이 모자랄 때는 해상 부유식 건식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는 충분한 부유 안정성과 계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10) 육상 보관소에 복층 선반(Rack)을 설치할 때는 마리나선박을 층층이 보관하고 이를 포크리프트 또는 상부 갠트리 호이스트 크레인, 리볼빙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 (11) 선반식 육상 보관소를 설치할 때는 노출 선반식, 지붕 선반식, 지붕 및 삼면 선반식, 옥내 선반식 중 자연환경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 (12) 선반에 적치되는 마리나선박의 무게는 다른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 척당 9톤을 기준으로 한다.
- (13) 선반 사이에는 최소한 선반에 적치되는 가장 큰 마리나선박 길이의 1.5배에 해당하는 폭을 갖는 통로를 두어야 한다. 보통 10m 길이의 보트를 포크리프트가 취급할 경우 최소 17m의 폭을 갖도록 한다.
- (14) 옥내보관소의 소방 설비에는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Water sprinkler system), 수막 폼 스프링클러 설비(Aqueous film producing foam injected water sprinkler system), 고 팽창 폼 설비(High expansion foam system) 등이 있다.
- (15) 중기의 최대 무게는 다른 상세한 자료가 없다면 포크리프트 10톤, 트레일러 40톤, 스트래들 호이스트 250톤, 트래블 리프트 250톤을 기준으로 하여 바퀴의 최대 접지 하중을 산정한다.

전문시방서
KPCS 64 45 45 : 2018

마리나선박 보관시설

2018년 4월 17일 발행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707호

☎ 02-2165-0090 E-mail : kpha@koreaports.or.kr

<http://www.koreaports.or.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http://www.mof.go.kr>